

처분시설의 단계별 안전규제

- 제1 단계 | ▶ 설계 및 건설·운영·폐쇄계획에 대한 안전심사
- 제2 단계 | ▶ 건설 중, 구조·설비 및 성능에 대한 사용전검사
- 제3 단계 | ▶ 운영 중, 정기검사·처분검사 및 품질보증검사
- 제4 단계 | ▶ 폐쇄계획에 따른 폐쇄 및 제도적관리계획 사전제출
- 제5 단계 | ▶ 관리종료보고서 사전제출 (필요시 수정·보완 조치)



허가신청서류

- ▶ 원자력법 제76조 등에 따른 건설·운영허가 신청서
- ▶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, 안전성분석보고서 등 첨부서류 10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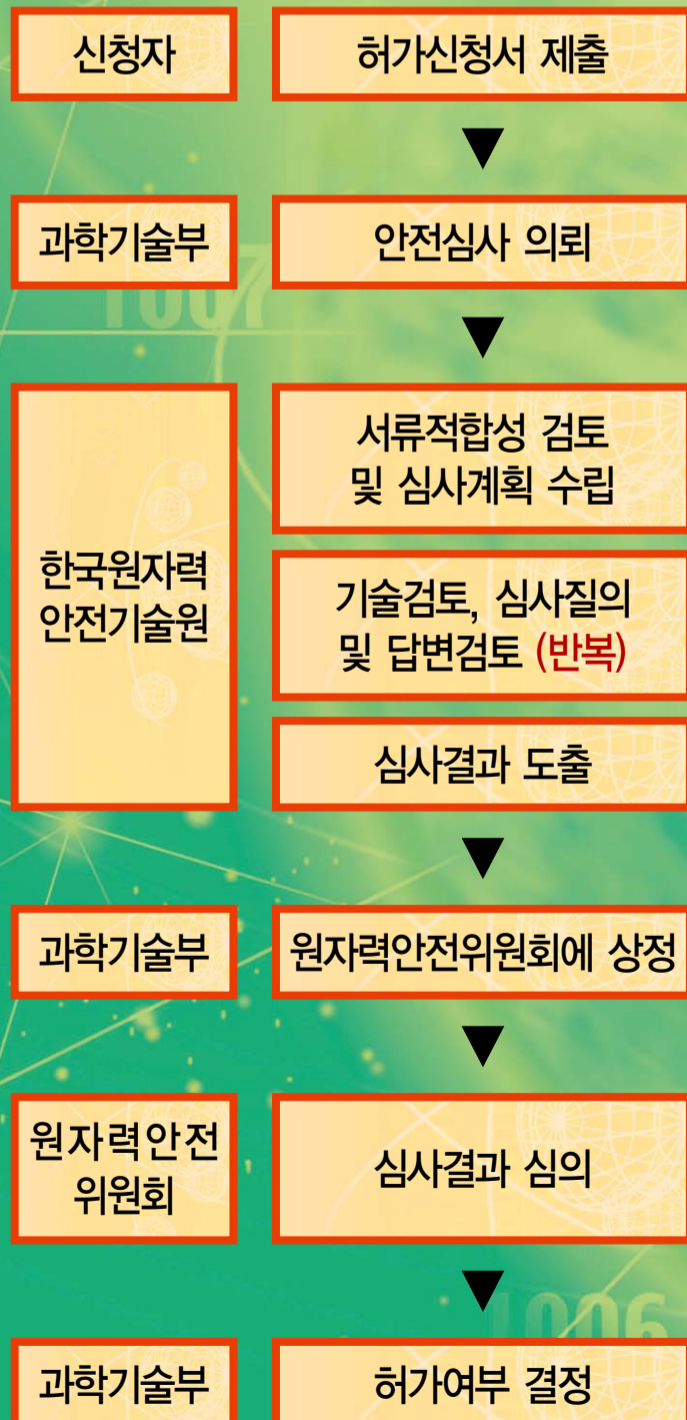
허가절차

- ▶ 안전심사 -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
- ▶ 심사결과 심의 - 원자력안전위원회
- ▶ 허가여부 결정 - 과학기술부

허가신청서류

-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
- 안전성분석보고서
- 안전관리규정
- 설계 및 공시방법에 관한 설명서
-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
- 폐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계획에 관한 서류
- 방사성폐기물의 저장·처리 및 처분방법에 관한 서류
- 폐기시설등에 저장·처리 또는 처분할 방사성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서류
- 폐기시설등의 건설·운영에 관한 기술능력에 관한 설명서
-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

허가절차



허가기준 | 원자력 관계법령에 규정

▶ 시설기준, 성능기준 및 방사성폐기물의 폐기기준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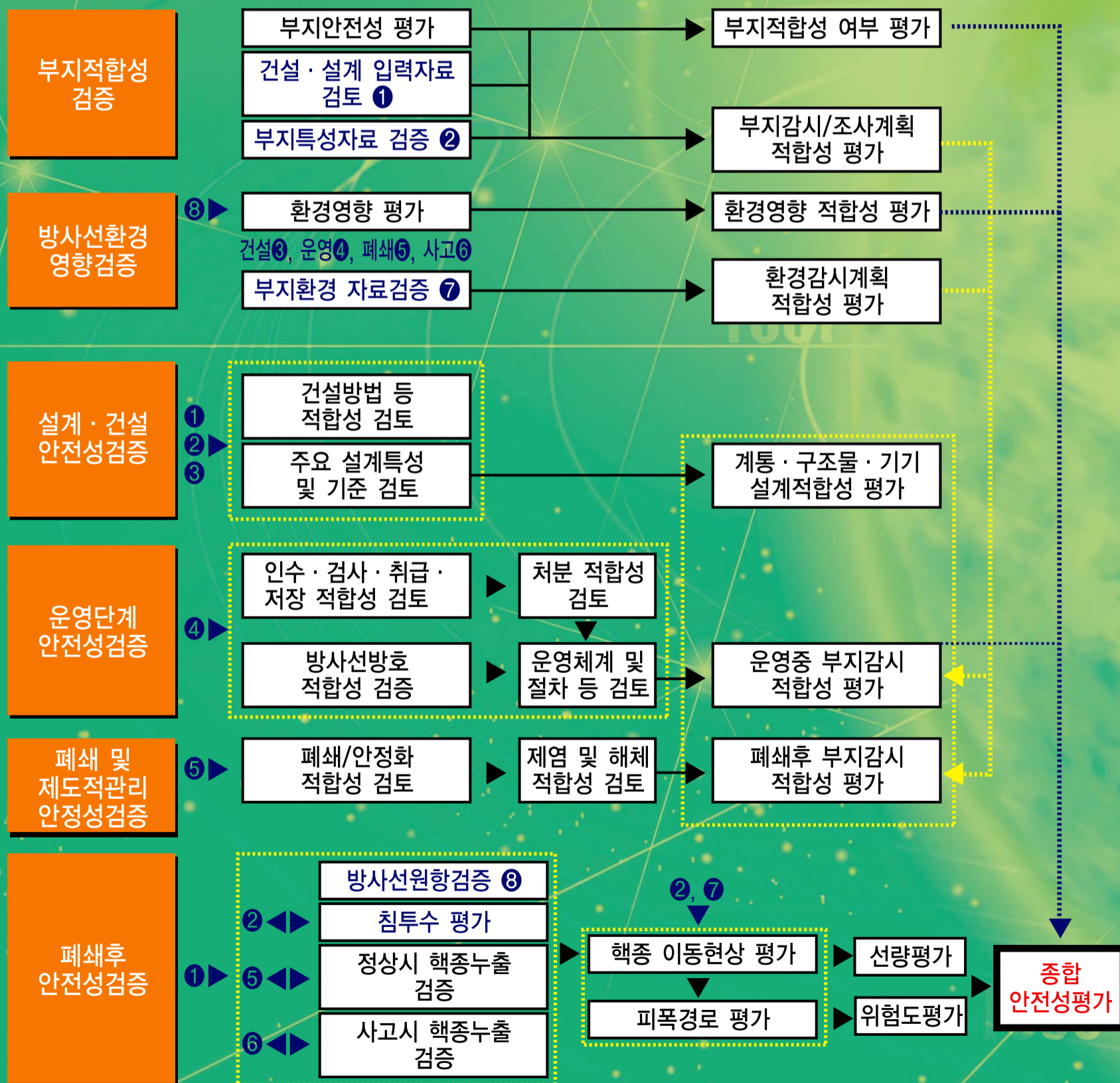
세부지침 | 안전심사지침(원자력안전기술원)으로 발간



전문분야별 안전심사

▶ 부지적합성, 방사선환경영향, 설계 및 건설, 운영·폐쇄 및 제도적관리 단계 안전성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기술검토

최종 기술판단 | 분야별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안전성평가



효율적 안전심사를 위한 심사일정계획 사전 수립 및 이행

- ▶ 분기 1회 심사질의 종합
- ▶ 제3차 질의종합 ('07.10말 예정) 1개월후 미결사항 도출
- ▶ 이후 1개월간 미결사항 해결을 위한 집중 질의/답변
- ▶ '07.12말 미결사항 해소여부 판단
 - 미결사항 해소시 | 심사결과(안) 도출
 - 미결사항 미해소시 | 해결시까지 집중 질의/답변 반복



※ 위 일정표는 인허가 신청서류의 완결성이 높고, 부지환경조건이 적합하며, 심사과정에서 주요 설계변경이 없다는 전제하에 작성되었음.